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4. 10.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4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3. 4. 1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 가. 제안이유

정부(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구가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로 규정함.  
(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2003. 3.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정원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에 한하여는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1개 과를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표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발급업무를 전담할 여권과를 신설하고 2003. 3. 10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시행일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 7. 1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여권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확보 방안과 인력재배치는 물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사무실 확보는?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현 청사는 협소하고, 120평 이상으로 외부 임대청사를 공덕로타리 또는 합정로타리 주위에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회관 1층에 150평 규모의 사무실을 검토 중에 있음.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투자에 대한 이득은 무엇인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수수료 등 실질적 이득은 없으나 주민편익 도모와 주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오운수 위원) : 임차비용 준비는?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20억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비는 추경에 반영예정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임차비용 외의 경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사무실 임차 후 지원되며 선 집행, 후 정산이 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04.0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정부(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구가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여권 발급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 개정골자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로 규정함.(안 제4조)

###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2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8.14 대통령령 제17707호)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비고 제3호
- (3) 행정자치부 자제12200 - 111(2003.2.25)호 및 서울특별시 조직 12200-334(2003.3.3)호에 의거 정원승인 통보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3.31)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를 “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동조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주민자치과·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p> <p>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2.(생략)</p> <p>(신설)</p> <p>33.(생략)</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여권과-----</p> <p>②----- -----</p> <p>1.~32.(현행과 같음)</p> <p>33.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p> <p>34.(현행 제33호와 같음)</p>